

## 한국농촌간호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개정 2022년 09월 01일

개정 2021년 02월 01일

개정 2017년 01월 01일

제정 2006년 09월 23일

1. 한국농촌간호학회 회칙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농촌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은 농촌간호와 관련된 범위 내의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석. 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학위논문임을 명시한다.
4.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5.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2~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한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7. 논문은 양적연구, 종설 및 질적 연구, 사례연구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8.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발송한다.
  - 3)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9. 심사 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능으로 결정한다.
10.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2~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1) 게재가능: 교정 없이 게재가능으로 결정한다.
  - 2) 수정 후 게재가능 :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4) 게재불가능 :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한 경우
    -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 ④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 ⑤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 불가능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1) 이의제기 : 투고자는 심사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3.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4.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

15.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을 허가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